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
----------	----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16일

발 의 자 : 김일영 의원 외 12인

1. 제안이유

현재 위원의 위촉은 공개모집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공개모집 이외에 무작위추출 방식을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개모집 방법 이외에 무작위 추출 방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관련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4.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무작위 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⑤ · ⑥ (생 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위원회의 참여를 주민으로서 무작위 추출방식에 따라 선정 된 사람</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